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. 12. 9 선고 2020가단1704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11. 18.

판 결 선 고 2021. 12. 9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통영시 D 대 14㎡에 관하여 2020. 7. 14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통영시 D 대 14㎡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2020. 7. 15. 접수 제147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소외 C는 2018. 6. 22. 원고와 원고 소유의 코나 차량 1대(차량번호 1 생략)를 총 렌트로 27,900,000원, 대여기간 60개월, 대여료 월 465,000원, 연체이자율 연 24%로 정하여 대여하는 '장기렌탈계약(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)'을 체결하였다.

나. C는 2020. 8.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료의 지급을 연체하였고, 원고는 2020. 10. 12.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제17조 제2항에 따라 C의 대여료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.

다. 2020. 11. 3. 기준으로 C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여렌트로는 16,979,600원, 위 차량의 잔존가치액은 6,641,001원이고, 연체료 34,854원이 발생하였다.

라. C는 2020. 7. 14. 피고에게 통영시 D 대 14㎡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),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2020. 7. 15. 접수 제147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19. 12. 13. 선고 2017다208294 판결 등 참조)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2018. 6. 22.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, C는 이 사건 증여계약 후 불과 1개월 뒤부터 원고에 대한 대여료를 연체하였으며, 그로부터 2개월 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의 C에 대한 렌트대금 등 채권이 발생하였는바(2020. 11. 3. 기준 합계 23,655,455원),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C에 대한 렌트대금 등 채권이 발생할

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, C가 대여료 지급을 연체하여 위 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, 원고가 C에게 가지는 렌트대금 등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갑 제7,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통영시 E 대 136㎡ 및 위 지상 브로크조 스투지붕 단층주택 41.49㎡를 소유하고 있었으나, 위 각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F조합의 채권최고액 23,4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 G의 채권최고액 30,0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고, 위 각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은 2020. 1. 1. 기준으로 25,300,000원인바, 위 각 피담보채권액의 합계액이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여, 위 각 부동산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,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.

채무자가 원고에 대하여 렌트대금 등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C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,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.

다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남편 소유이고, 피고의 아들 H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,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라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

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정혜승